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1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3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3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5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3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5
1. 정의	15
2.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17
3.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5. 참정권 및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24
6.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등	29
7.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31
8.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33
9. 부칙	36

I. 개요

1.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5. 6. 27.
- (3) 회 부 일 : 2025. 6. 30.

나.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등의 지원방법으로는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장애인 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3)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의료 및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훈련 하여야 함(안 제18조).
- (6)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자문위원회, 지원센터 등 추진체계 및 지원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참정권,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자립, 자조단체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7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참정권)
제10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제11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12조(교육 지원)
제13조(자립 지원)
제14조(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

제15조(의료 및 상담 등 지원)	
제1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17조(소득보장)	
제18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19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의 위탁)	
제20조(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제21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제22조(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4조(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 및 협력)	
제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26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 등으로 시력과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두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임.
-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를 둠.
-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자립, 자조단체 구성, 의료 및 상담,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소득보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음.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훈련하여야 함.
-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 발굴·상담 및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지원, 의사소통 보조기구 보급 지원,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 인식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 시청각(Deaf-Blindness)장애란 일반적으로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되어 두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¹⁾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파견 노력 의무 및 직업재활,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자조 모임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국가와 지방

1)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151).

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²⁾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³⁾에 따른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상 정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노력 의무” 또는 “시책 강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며, 동 센터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책 제안과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참고자료 1: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개요).

-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파견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한편, 2019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하여 지닌 자'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정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청각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례 제명	주요규정 사항	비고
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주간활동·돌봄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2019. 6. 12. 제정
2	경 기 도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활, 심리상담, 직업지원,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	2021. 1. 16. 제정
3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사소통, 자조모임, 자립생활 교육, 직업재활, 보조기기 연구 개발, 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2021. 5. 20. 제정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제 명	주 요 규 정 사 항	비 고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 태조사, 의사소통, 자조 모임, 자립생활 교육, 직 업재활 사업 등	2023. 7. 13. 제 정
5	전라남도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사소통, 이동지원, 자립생활 교 육, 직업재활, 전문인 력 양성 사업 등	2024. 2. 15. 제 정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시청각장애 인의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직업재활, 주간활동·돌봄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심리상 담 사업 등	2025. 5. 12, 제 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 후, 재구성(최종검색일: 2025.7.31.)

□ 아울러, 이처럼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실태조사조차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통계조사인 ‘장애실태조사’에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조사항목으로 구분하거나, 별도로 조사한 사례가 없어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규모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⁵⁾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최근 보건복지부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결과 정리 중으로, 2025년 말 공개할 계획임.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6월, 등록장애인 사회보장급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전체 등록장애인 2,626,359명 중 시각 및 청각 중복장애인은 9,249명으로 등록장애인의 약 0.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2024년 12월 기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시각 및 청각 중복장애인은 10,56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⁷⁾

그러나 시청각장애는 주 장애 등록 시 시각 또는 청각으로 등록하였다가 청각과 시각 등 다른 중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아동기 때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유형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⁸⁾

□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로만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로는, 소통의 제약, 일상생활의 곤란, 사회적 고립 등 시청각장애인의 복합적인 특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6) 동 연구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전맹-전농’, ‘전맹-난청’, ‘저시력-전농’, ‘저시력-난청’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맹은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밝은 빛만 식별 가능한 상태, 전농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 저시력은 손을 눈앞에서 움직이면 인지 가능한 수준 이상의 시력 또는 시야장애만 있는 경우, 난청은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청력 또는 평형기능 장애만 있는 경우를 의미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00).)

7) 보건복지부 제출

구분	중복장애인 수(명)	비율
시각 심한 + 청각 심한	419	4.0
시각 심한 + 청각 심하지 않은	2,205	20.9
시각 심하지 않은 + 청각 심한	1,270	12.0
시각 심하지 않은 + 청각 심하지 않은	6,666	63.1
계	10,560	100.0

8) 이송희, & 홍승주. (202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혼합연구. 보건과 복지, 24(3), 35-59.

이들을 단일 장애 유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보 접근·교육·고용·자립·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이 같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과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장애인복지법」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하여 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구의 개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파견, 직업재활·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모든 장애인이 각자 특성과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에 한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

는 것은 중복장애를 가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 및 기준 설정의 명확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⁹⁾

셋째, 기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및 시설과 기능 중복, 예산·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통합성과 일관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상 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이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도 추진될 수 있다는 점, ②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이 다른 중복장애 유형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 및 정책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영국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보조공학 및 통역, 자립생활 훈련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의 경우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기존 장애인 복지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기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9) 2023년 기준, 중복장애인은 총 172,761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2,641,896명 대비 6.5% 수준임.(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3년 중복장애인 통계.)

<해외 주요국의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의 및 지원 내용 등 정리>

구분	관련 법령 및 정의	주요 지원 내용
미국	「Helen Keller National Center Act」에 따라 시청각장애를 ‘법적 맹(盲)과 심각한 청각 손상의 결합으로, 일상활동의 독립성, 심리사회적 적응,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심각한 의사소통 및 발달·교육적 요구를 초래하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동시 결손’으로 정의함.	헬렌켈러국립센터를 중심으로 보조공학, 의사소통, 독립생활훈련, 보행훈련, 직업훈련, 전문가 양성 등
일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신체 장애로 포괄함.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금부(개호금부, 훈련금부) 및 지역사회지원사업(통역활동지원사 파견) 등
독일	2016년 12월부터 중증장애인 카드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로 표기함. - 청각장애정도(GdB) ≥ 70 + 시각장애정도(GdB) ≥ 100 충족 필요 ※ GdB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손상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기능침해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함.	시청각장애인수당, 의사소통 및 통역지원, 보조인 서비스, 보조기기, 주거, 선거 지원 등
호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률 및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시청각장애를 의사소통·사회화·이동 등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감각장애로 인식함.	NDIS(국가장애보험) 기반 개별예산 지원, 서비스 구매 권한 부여 ※ 민간기관 중심 지원
영국	「Care Act 2014」 법률에 따른 지침 「Support for Deafblind Children and Adults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욕구조사 후 개별 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관련 법령 및 정의	주요 지원 내용
	」(2014)에 따라 시청각장애를 ‘dual sensory loss’로 규정하며, 출현 시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① 선천적으로 청각 및 시력이 손상된 사람, ② 선천적 시각장애가 있고 이후 청력손실, ③ 선천적 청각장애 이후 시력손실, ④ 중도 청각과 시력에 손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00). 및 김철주. (2021). 시청각장애인의 ‘헬렌켈러법’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사회법연구, 43, 125 - 166. 및 이송희, & 홍승주. (202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혼합 연구. 보건과 복지, 24(3), 35 - 59.의 내용을 정리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인 시청각장애인의 정의 및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보급, 전담기관 설치 등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기 반영되어 별도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으며,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중복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요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장애 계에서도 의견 대립의 가능성이 있어, 시청각장애인에 한정하여 별도 법률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시청각장애인 욕구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을 검토 중이며, 시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나. 기획재정부

-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률과의 적합성 고려 및 「장애인복지법」과의 중복 조항을 간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제정안 재정비가 필요함.

라. 헬렌켈러센터

-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시청각장애인 역량강화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정안** 제2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력과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시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로 간주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관점¹⁰⁾도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특히, 단순히 두 감각 기능 손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측이 어려운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주로 포섭함으로써, 의료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복합적 장애 특성까지 인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10) 변민수, & 박종빈. (2019). 통합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장애범주 검토. 기본과제보고서, 1-122.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의 정의는 부칙 제2조에 의해 「장애인복지법」¹¹⁾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의 개념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대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실적 실현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정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시청각장애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1)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가족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제3조(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시청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3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권리, 자신의 신체 및 재산에 관해 스스로 판단할 권리,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법적·사실적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지원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지원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 제3조제5항**에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개념을 미성년자인 경우의 법정 보호자, 성년 당사자의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청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에 의한 지원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정책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1조¹²⁾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실태조사가 장애인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총괄하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다만, 시청각장애인은 감각장애의 중복성과 고유한 의사소통 특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장애실태조사 방식만으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문항 및 조사 방식 전반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문 인력 참여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정안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미리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¹³⁾에 따라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방향 및 실행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실무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양 계획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제정안 제6조 및 제7조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실태조사가 수립·실시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경우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3)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정안 제8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개의 개별 법률 등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함.¹⁴⁾

이는 시청각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도 존재하므로, 제정안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적용 또는 보충 적용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정안의 독자적인 효력이 제한되고, 적용 범위도 다소 축소될 우려가 있음.

특히, 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내용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14)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장애인복지법」과 제정안 유사 내용 비교>

「장애인복지법」	제정안
• 제22조제5항: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	• 제10조제1항: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
• 제22조제5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 • 제35조의2제1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	• 제18조제1항: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이동,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양성·훈련 등 • 제19조제1항: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훈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 제35조제2항: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제9조~제17조: 참정권,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 의료 및 상담 등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소득보장 • 제21조: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② 제정안 부칙 제2조15)에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단일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 제정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5)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5. 참정권 및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9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시청각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시청각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정책, 선거 및 정치참여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개발·보급과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3항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체계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나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및 보행·이동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료 및 상담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치료와 재활의료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이 시청각장애인을 적절히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정치 참여,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교육, 자립생활, 문화·여가 활동 등 주요 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제정안과 유사한 법률 조문 및 주요 내용 >

구분	유사 법률 조문 및 주요 내용
제9조(참정권)	• 「공직선거법」 제6조 장애인 선거인의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 「공직선거법」 제62조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허용 • 「공직선거법」 제65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점자형) 작성·제출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제 10 조 (정 보 접 근 및 의사소 통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제 11 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강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 실시

구분	유사 법률 조문 및 주요 내용
제 12조(교육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강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제 13조(자립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 조성
제 14조(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경비 지원
제 15조(의료 및 상담 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등 필요한 정책 강구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제 16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
제 17조(소득보장)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정도, 경제 수준 고려 장애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보호자의 경제 수준, 장애아동 장애정도 고려 장애아동수당지급 •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후 정리

이처럼, 전체 장애인 지원의 틀 안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정안에서는 현행 법령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시청각장애인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선별적·보완적 지원만을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제정안 제12조(교육 지원)에서는 맞춤형 교육,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행정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령 또는 공동부령 등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6.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등

제18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이동,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이하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라 한다)을 양성·훈련하여야 한다.

②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의 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훈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훈련의 내용 및 방법,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양성·훈련, 자격 관련 사항 및 업무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이동, 정보 접근 등 복합·중복적 어려움을 훈련된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¹⁶⁾에 따라 현재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¹⁷⁾
- 전국 단위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는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현장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2: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에 대한 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활동지원사 자격 체계 내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 분야를 별도 종목 또는 전문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실효적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도와는 구분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제20조(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시청각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20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시청각장애인 또는 그 가족)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기구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¹⁸⁾에 그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규정되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설치 근거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¹⁹⁾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청각장애인위원회의 기능이 순수 자문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²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심의·조정 기능을 함.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20)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1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 발굴·상담 및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지원
2.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구 보급 지원
3. 시청각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및 돌봄 제공
5.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보행 등 교육 지원
6. 시청각장애인 심리상담 지원
7.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교육·상담서비스 제공
8.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9.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훈련 및 배치 지원
10.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1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1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시청각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시청각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정안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안 제21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제2호).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구분 없이 동일한 명칭과 수행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책 기획·제도 관리 기능(인식개선 홍보, 연구수행 지원 등)과 지역사회 기반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자립지원 및 돌봄 제공, 정보·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하나의 기관에 혼재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 불분명, 업무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구성 시 시청각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인적 기반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²¹⁾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자칫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셋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명칭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특히,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에는 ‘시청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명칭까지 금지할 경우 ‘시청각장애인 상담센터’, ‘시청각장애인 지원 모임’ 등과 같은 당사자 관련 다른 단체의 정체성 표현이나 권익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칭 사용의 맥락, 혼동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명칭에 한정하여 금지할지 또는 유사 명칭까지 포함하여 금지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1) 시청각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85.68%(9,249명 중 7,925명)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0-00)).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청각장애인(「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5항의 ‘시청각장애인’을 제정안의 정의 조항²²⁾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이는 동 제정안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입법 및 심의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임.

다만, 제정안의 정의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접근, 의사소통 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관련 사항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미칠 영향(등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2)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지 기능이나 행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나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거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관련 예산 반영,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사전 준비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시행 전 필요한 행정조치나 조직 설립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사실행위를 넘어 법적 권한을 수반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명시적으로 둬야²³⁾

23)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과 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간 기능의 유사성이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개요〉

- (정의)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제2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수행기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 (수행기간/지원예산) '24.10.1.~'27.12.31(3년 3개월)/ 260백만원('25년)
-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 세부내용)
 -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책제안
 -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청각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활동지원개론 (8시간)	장애의 이해	2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2	-
	장애와 인권	2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2	-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20시간)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2	2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2	2
	보조기기의 이해	2	2
	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1	2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2	2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1	-
	활동지원의 실제	1	-
활동지원의 실제 (12시간)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2	2
	의사소통 지원	2	2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1	2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활동지원개론 (8시간)	장애의 이해	2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2	-
	장애와 인권	2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2	-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20시간)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2	2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2	2
	보조기기의 이해	2	2
	장애인의 재난대처 및 감염병 관리	1	2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2	2
	장애인 건강권의 이해	1	-
	활동지원의 실제	1	-
활동지원의 실제 (4시간)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1	2
	소계	20	12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42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4시간, 의사소통지원 4시간 감면**

자료: 보건복지부